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53
----------	------

2020년 9월 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이성배 의원(찬성자 9명)
- 나. 발의일자 : 2020년 8월 12일
- 다.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 라. 상정결과 :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2020년 9월 2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성배 의원)

가. 제안이유

- 스포츠는 모든 국민이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선용할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하며, 스포츠 활동과정에서도 모든 국민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
-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아직
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지지 않는 실정임.
- 이에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신고·상담 시설 설치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이 자유롭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체육인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체육인 인권 교육(안 제5조)
- 인권위원회 심의(안 제6조)
-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조례안은 체육인의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인권 침해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됨.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시장의 책무(제3조), 기본계획 수립(제4조), 체육인 인권 교육(제5조), 인권위원회의 심의(제6조),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제7조) 등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의 필요성

-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19년 1월 체육분야 '미투' 확산과 '20년 6월 고(故)최숙현 선수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체육계 내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등 체육인의 인권보호 시책에 관하여 명문화하고 있음('20년 8월 시행)

현재 서울시는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별도의 명문규정은 없는 상황이며 시민의 인권을 보호·증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근거규정이 있으며,

관련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동 조례안은 체육분야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상담, 인권교육 등 인권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유일하게 별도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조례안」 2020.4.제정)를 시행 중임.

□ 세부내용 검토

- 동 조례안은 제1조(목적)에서 서울시가 체육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 제2조(정의)에서 “인권”, “선수”, “체육지도자”, “경기단체”, “체육인”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제1호 “인권”을 정의함에 있어 상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정의규정을 적용하여 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함.

관련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1호.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2호 “선수”와 제3호 “체육지도자”도 「국민체육진흥법」의 정의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그 밖에 제4호 “경기단체”는 서울시체육회와 그 종목단체, 서울시장애인체육회와 그 종목단체, 서울시 (학교, 직장 등) 운동경기부를 포함하고 그 소속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제5호에서 “체육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 추진과 정책 수립과정에 체육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노력 및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등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에서 체육인 인권 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 추진목표 등을 포함한 체육인 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또한 제6조(인권위원회의 심의)에서 기본 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포함내용 등이 유사하여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제5조(체육인 인권 교육)에서 경기단체나 체육인이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실 있는 교육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7조(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에서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¹⁾이

1)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 센터를 설립한다.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 8. 18.>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6.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7.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④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8. 18.>
- ⑤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의 스포츠윤리센터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8.>
- ⑥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 8. 18.>
-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2020.2.4.신설, 2021.2.19시행)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보임.

현재 서울시체육회는 외부 전문 스포츠 심리상담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시·구 직장운동부 선수단, 시 산하 공사·공단팀 선수단, 구 생활체육지도자, 구 체육회·회원종목단체, 시체육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 관련 수시 모니터링 기능 및 신고 창구 역할,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지원 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문 변호사의 법률상담지원을 통해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활동을 하고 있음.

기존 체육계의 존재하던 다양한 내부 신고체계는 피해자가 자신의 경력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만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업무협약을 통해 익명성과 신분 보장이 가능한 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음.

서울시체육회는 '19년 1월 스포츠 심리상담기관(케이스포츠심리상담)과 업무협약 후 홍보 부족, 예산상의 한계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관련 근거를 견고히 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신고·상담의 문턱을 낮춰줄 것을 기대하는 바임.

□ 종합 의견

- 동 조례안은 체육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의 적극 공감하고 상위법 등의 법령위반 사항이 없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 ⑧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8. 18.> [본조신설 2020. 2. 4.] [시행일 : 2021. 2. 19.]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

(이성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853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발 의 자 : 이성배 의원(1명)

찬 성 자 : 홍성룡, 유 용, 전석기, 노승재,
최 선, 정진철, 문병훈, 김소영,
고병국 의원(9명)

1. 제안이유

- 스포츠는 모든 국민이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선용할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하며, 스포츠 활동과정에서도 모든 국민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
-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지지 않는 실정임.
- 이에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신고·상담 시설 설치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이 자유롭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체육인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나.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라. 체육인 인권 교육(안 제5조)
- 마. 인권위원회 심의(안 제6조)
- 바.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체육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권이 보장되는 운동환경을 보호하고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를 말한다.
3.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4. “경기단체”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그에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와 그에 가맹한 단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운동경기부(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를 말한다.
5. “체육인”이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등 다른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체육인 인권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인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

2. 대상별 핵심 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

4. 체육인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의 실시

5.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6.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세울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체육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인권 교육) ① 시장은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방지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기단체나 체육인이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초·중·고, 대학, 실업팀, 장애인 등 선수의 유형과 선수·체육지도자 등 교육 대상에게 특화된 교육 체계(정서적·심리적 안정 지원을 포함한다)를 마련하여야 하며, 교육 체계에 따른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교재 개발,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인권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체육인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단체와 그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사항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은 서울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운동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4조제3항에서 체육인 인권관련 실태조사 실시, 제5조 제1항에서 체육인 인권 교육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5조 제2항에서 선수유형별 특화된 교육체계마련 및 교재개발, 강사양성 등을 지원 하도록 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교육대상 유형이 다양하고 지원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함에 따라 비용추계하지 아니하고

안 제7조에서 체육인 보호를 위한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토록 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체육회에서 인권심리상담센터 운영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동 조례안 관련 서울시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내용〉

구 분	2020년 예산	세부내용
안 제7조(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 등) 관련	46백만원	인권심리상담센터 운영비 (서울시 체육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임(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23,000천원(연평균 24,6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23,000천원으로 연평균 24,6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안 4조 관련 체육인 대상 실태조사 비용은 1회당 온라인 설문조사비(300천원)를 기준으로 22개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가정하여 산출

- 안 제5조 체육인 인권교육 비용은 1명의 강사가 연 2회 25개 팀을 대상으로 교육시킨다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

※ 강사수당은 ‘20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일반 2급 225천원)으로 산정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123,000천원(연평균 24,6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내용 및 조항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계
세입	소계(a)	-	-	-	-	-	-
세출	인권침해 실태조사 (제4조)	6,600	6,600	6,600	6,600	6,600	33,000
	체육인 인권교육 (제5조)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총 비용(b-a)		24,600	24,600	24,600	24,600	24,600	123,000

- 인권침해 실태조사 : 6,600천원

· 300천원(회당 설문조사비) × 22팀 = 6,600천원

- 체육인 인권교육 : 18,000천원

· 1회당 360천원(강사수당 225천원 + 일반운영비 135천원)

× 연2회 × 25팀 = 18,00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분석관(주무관) 양훈

☎ 02-2180-7934

e-mail : huny101@seoul.go.kr